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년 9월 14일
행 정 재 경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고영찬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고영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최근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의 급증으로 신체적·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바,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과 지역사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
○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○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추진(안 제5조 및 안 제7조)

○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교육·홍보(안 제9조 및 안 제10조)

○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로 사회전반에 대해 불안감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발의되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, 피해자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

○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, 선제적이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